

공 고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의
규정에 의하여 정읍지역자활센터 2026년도 세입·세출
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▷ 공고 기간 : 2025년 12월 24일(수)부터 ~
- ▷ 공고 장소

- 정읍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정읍시청 홈페이지 게시판

2025. 12. 24.

정 읍 지 역 자 활 센 터 (직인생략)

예산총칙

제1조 (예산의 구성) 2026년도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산하 정읍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보조금수입과 사업수입, 후원금수입, 자부담수입, 전입금수입, 이월금, 잡수입으로 한다.

제2조 (운영비 예산) 총 세입예산액은4,094,069천원, 총 세출예산은4,094,069천원으로 한다.

1)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고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서 내역과 같다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보조금(센터운영비) | 514,753천원 |
| ② 보조금(자활근로사업) | 2,783,560천원 |
| ③ 사업수입(자활근로사업 매출수입) | 729,925천원 |
| ④ 후원금수입 | 16,774천원 |
| ⑤ 자부담수입 | 45,221천원 |
| ⑥ 전입금수입 | 1,436천원 |
| ⑦ 기타잡수입 | 2,400천원 |

2)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서 내역과 같다.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사무비(인건비) | 502,484천원 |
| ② 사무비(업무추진비) | 776천원 |
| ③ 사무비(운영비) | 14,259천원 |
| ④ 교육사업비 | 3,000천원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⑤ 재산조성비 | 0천원 |
| ⑥ 자활근로(인건비) | 2,244,128천원 |
| ⑦ 자활근로(사업비) | 539,432천원 |
| ⑧ 예비비및기타 | 3,135천원 |
| ⑨ 후원사업비 | 11,709천원 |
| ⑩ 자부담사업비 | 35,221천원 |
| ⑪ 자활기금사업비 | 10,000천원 |
| ⑫ 사업비(자활근로사업 매출지출) | 729,925천원 |

제3조 (예산의 집행) 예산의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정읍지역자활센터의 제 규정을 준용하며 세출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예산의 각 항 목간에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- ①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.
- ②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.
- ③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항·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.

제4조 (보조금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 (추가경정예산)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결의를 받아 집행한다.

제6조 (보조금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 정부회계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,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한다.

제7조 (채무부담행위) 없음

제8조 (명시이월비) 없음

제9조 (사고이월비) 없음

제10조 (예비비) 2026년도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집행사유 발생 시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1%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. 단, 예비비 사용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.

2025. 12. .

정읍지역자활센터장 (직인생략)